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12. 18.사회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 2009년 11월 17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9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회의(2009년 12월 3일)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규정을 반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촉진하 며, 또한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혜택을 줌으로써 각종행사와 생활체육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민체육센터 개인사용료 및 대림운동장 사용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사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개정[1~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안 제8조제2항 별표2 및 별표3)
-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 시
 - ·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 시 100분의 100을 감면
 - ·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행사 등 개최 시 100분의 50을 감면 (안 제8조제3항 별표 4)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이남식)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규정을 반영하고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공공체육시 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보면,
- 구민체육센터 개인사용료 및 대림운동장 사용료 중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의 사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개정하고자 하며[1~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안 제8조제2항 별표2 및 별표3)
-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중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 시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행사 등 개최 시 100분의 50을 감면(안 제8조제3항 별표 4)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부칙에 [별표 4]의 비고 제3호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행사 등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규정의 신설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4. 審查結課: 原案 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251 호 제출연월일 : 2009.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규정을 반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촉진하며, 또한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혜택을 줌으로써 각종행사와 생활체육단체의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민체육센터 개인사용료 및 대림운동장 사용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사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개정(1~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별표2, 별표3)
- 나.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 시
 - .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100분의 100감면)
 - .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행사 등(100분의 50감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부서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 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09. 10. 15 ~ 11. 04 20일간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비고라 제6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별표 3, 비고란 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별표 4, 비고란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시 감면율은 다음 과 같다.
 - 가.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 나.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의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 2]

비고

구민체육센터 개인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艦		小科器		活定时经验线1人亿分					
걘	대상	(회) (数	쥬회		쥬회	裥	翘	和	
	성인	4000	16000	32,000	48,000	56,000	64,000	72,000	
수황	청년	3000	12,000	24,000	36,000	42,000	48,000	56,000	
	예한	2500	10,000	20,000	30,000	35,000	40,000	45,000	
755	성인	6000	월120,000						
垩 協	7.14.1			20,000					
ા કા	성인	2,500	월 50,000 월 40,000						
地	청년 (아))	2,000							
	성인	3000							
챼완	청년	2000							
	애	1,500							

-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 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
- 2. 수영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3.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 사용 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 4.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 하여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5. 6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 l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년 의 50을 감면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은 사용료의 100분의

40을 감면하고, 장애등급이 4급 에서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규정에 의한 수급 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라. 「노인복지법」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 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 분의30 을 감면한다.
- 7.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 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

[별표 2]

구민체육센터 개인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一條		¬1-b10:=	경구로 택일시용로 성합 [시간 기취					
걘	대상	/본) (회 상)	즦 회	翘		福	翘	福
수항	성인	4000	16,000	32,000	48,000	56,000	64,000	72,000
	청년	3000	12,000	24,000	35,000	42,000	48,000	56,000
	예한	2,500	10,000	2000	30,000	35,000	40,000	45,000
.च्या	성인	6000	월120,000					
골 영광	청년 (야한)	5,000	월100,000					
3184	성인	2,500	월 50,000					
#相 记录	청년 (야朗	2,000	월 40,000					
	성인	3000						
淋紀	청년	2000						
	애	1,500						

-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 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
- 2. 수영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3.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 사용 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 4.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 하여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5. 6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 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 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분 의 50을 감면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다(1~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인 포함).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 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라. 「노인복지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 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7.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 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

[별표 3] 대립운동장 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기준 분 평 일 통휴일 (토요일포함 운 영 시 간 비고 기준 명 명 일 (토요일포함 문 영 시 간 비고 기준 영 (도요일포함 원 영 시 간 비고 이용 기준 (2 시 간 이용 이용 기준 (2 시 간 용 기준 으로 하며 기준 시간당 회 기본료의 10분의 시 제5조의 우선준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 되 잔여분은 주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할 수 있다. 가. 토 인 ·공휴일은 회 사용료의 10분의 30이내에 서 가산한다. 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분의 30이내에 서 가산한다. 가. 토 의 ·공휴일은 회 사용료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당 그 제용6조제1항에서 정한 자 및 15 ·1 원명주유공자에서의 관한 법률 시행당 2 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분 시행당 기존에서 정한 자 및 15 ·1 원명주유공자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분 시행당 기존에서 정한 자의 대하여 10분 시행당 기존에는 10분 이용조제1항에서 정한 자의 대하여 10분 시행당 기존용조제1항에서 정한 자의 대하여 10분 기존용조제1항에서 정한 자의 법률 시행당 1세용조자 1항 대를 시행당 1세용조자 1항 대를 시행 기관용조자에 1차에 1차에 1차에 1차에 1차에 1차에 1차에 1차에 1차에 1차
구 분 평 일 (동요일포함 운 영 시 간 비고 대립운동강 축구장 40,000 52,000 11월 ~ 2월 07:00~18:00 11당 (2시간 11년운동강 축구장 40,000 52,000 10,400 52,000 11월 ~ 10월 06:00~19:00 11년 기준 (2시간 11년은동강 테니스장 8,000 10,400 06:00~22:00 기준 (2시간 11년으로 참 기준 (2시간 11년은동강 11년스장 8,000 10,400 06:00~22:00 1년 기준 (2시간 11년으로 참 기준 (2시간 11년으로 참 기준 (2시간 11년으로 참 기준 (2시간 11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일 이상 경합 시 제5조의 1시간 비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일 이상 경합 시 제5조의 1시간 비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일 이상 경합 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부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할 수 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할 수 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할 수 있다. 4. 대립운동장 테니스장 개인사용료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할 수 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2조제1항에서 정한 자 및 1.10년 제1년은동장 테니스장 개인사용료는 다음 제1년은동장 테니스장 개인사용료는 다음 기구 (11년 등장 테니스장 개인사용료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기관 (11년 등장 테니스장 기관사용료을 기사할 수 있다. 기구 (11년 등장 테니스장 기관사용료로 기사할 수 있다. 기구 (11년 등장 테니스장 기관사용료로 기관사용료로 기관사용료로 기관사용료로 기관사용료로 기관하고 제공 (11년 등장 테니스장 기관사용료로 기관사용료로 기관사용료로 기관사용료로 기관사용료로 기관사용료로 기관하고 제공 (11년 등장 테니스장 기관사용료로 기관사용
대임은동광 축구장 40.000 52.000 52.000 07:00~18:00 1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2시간 06:00~19:00 기준 (2시간 1)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 로는 1시간당 회 기본료의 10분의 10분의 10분의 10분의 10분의 10분의 10분의 10분
비교 10.400 10.400 06:00~22:00 기준 (2시간 11년) 10.400 1
전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 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분의 5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할 수 있다. 가. 토・일・공휴일은 회 사용료의 10분의 30이내에서 가산한다. 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분의 30이내에서 가산한다. 4.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개인사용료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정한 자 및 1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제86조제1항에서 정한 자 및 1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제86조제1항에서 정한 자 및 1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제86조제1항에서 정한 자 및 1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1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시항령 및 제86조제1항에서 정한 자 및 1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시항령 및 1518민주유공자에 의 1518민주유공자에 의 관한 법률시항령 및 1518민주유공자에 의 관한 법률시항 및 1518민주유공자에 의 1518민주유공자에 의 관한 법률시항 및 1518민주유공자에 의 관한 법률시항 및 1518민주유공자에 의 관한 법률
의 50을 감면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명은 사용료의 10분의 40을 감면한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5.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변표 4) - [별표 4] - 구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제8조제3항 관련) - (단위 : 원) - (단위 : 원)

	(단위 : 원)							
사용료 구분	대 상	대관료	비고					
체육관	체육경기	150,000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세파산	기 타	300,000	1명당 1,500원을 추가 하여 징수한다.					
	- 수영장은 기본인원 체육경기 280,000 7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2,000원을 추가							
수영장	기 타	560,000	하여 징수한다 동절기(11월~2월) 수영장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 을 가산한다.					
비고	1.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한다 가.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 서 가산한다. 2.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기 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 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I시간으로 본다. 3.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							

로 한다.

	(단위 : 원)					
사용료 구분	대 상	대관료	비고			
체육관	체육경기	150,000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을 추가 하여 징수한다.			
세포선 	기 타	300,000				
	체육경기	280,000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2,000원을 추가			
수영장	기 타	560,000	하여 징수한다 동절기(11월~2월) 수영장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 을 가산한다.			
비고	을 가산한다. 1.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한다가.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2.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시간으로본다. 3.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 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4.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					